

창원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 규정

제정 2018. 09. 27.

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창원시장장애인체육회 (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2장제7조(가맹 및 탈퇴) 및 제5장에 근거하고 가맹·탈퇴 규정에 의거 가맹이 승인된 종목별 가맹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주소 등) 가맹단체는 당해 종목별 경기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창원시를 통할 할 수 있는 용어로서 각 가맹단체가 영문명칭을 포함하여 명칭을 정해야하며 창원시장장애인○○협회(회·연맹)라 칭한다. 사무소는 창원시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3조 (목적 및 사업) 가맹단체는 각 소관 경기종목을 창원시에 널리 보급하여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 및 지도자를 양성하여 창원시장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 사업을 관장한다.

1. 해당 종목의 기본방침 심의·결정
2. 해당 종목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전국 종목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종목대회의 개최 및 주관
5. 해당 산하 연맹단체 와 지부의 관리 및 감독
6.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경기종목의 선수등록 및 선수관리
8. 해당 종목의 심판, 전문지도자 등의 양성

- 9. 해당 경기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 10.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제3장 권리와 의무

제4조 (권리)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 2. 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 3.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후원할 수 있다

제5조 (의무)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1. 장애인체육회 제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해당 도경기단체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가맹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가맹단체 지도육성) ①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가맹단체 경기인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거나 육성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가 장애인체육회 규정, 지시사항의 위반, 가맹단체장의 결원,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단체에 대해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서 이를 따로 정한다.

④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장애인체육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탈퇴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⑤ 가맹단체로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가맹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회지원금 또는 지원사항을 감액, 회수, 중단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부) ① 가맹단체는 당해 대의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구에 지부

를 둘 수 있다.

② 가맹단체의 지부의 권리 및 의무는 제4조 및 제5조에 준하여 정한다.

제4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가맹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증원할 수 있다.

1. 가맹단체 선임임원 :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35인 이내,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2. 위촉임원 : 명예회장, 고문 약간인

② 선임임원 중 감사 1인은 회계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9조 (임기) ① 선임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2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임기의 기산은 처음 개최되는 정기 총회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임 및 위촉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감사를 선임한 임원은 선출당시임원의 정수 중 부회장 및 이사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 또는 증원하여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선임임원의 임기 중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모든 선임임원을 개선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 일 때에는 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 일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과 정기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에는 선임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④ 선임임원은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가맹단체의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를 제외한 선임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③ 가맹단체의 각종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이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④ 전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 의 동의를 얻는다.
- ⑤ 선임임원 및 위촉임원은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를 선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선임임원 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취임은 장애인체육회와 협의를 통해 인준을 받아야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이후에도 당연히 선임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 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군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9.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 단체 지정 등으로 사임하거나 해임된 자
 10. 체육회, 가맹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 ⑧ 가맹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가맹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가맹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단체는 해당자로부터 가맹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가맹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⑩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시·도 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 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위촉임원) ① 명예회장 및 고문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② 고문은 회장의 자문기구이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동일인의 겸직제한) 동일인이 다른 가맹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동계와 하계종목간의 경우는 해당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해당종목 다른 경기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 (선임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가맹단체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업무를 대리 하며, 이때 회장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자가 대리하지만 회장 지명이 없을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가맹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당해 가맹단체의 회계 및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가맹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와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가맹단체의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는 사항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제14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가맹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가맹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 이전 30일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 한다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 제7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승인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10조 7항에 해당되는 때
3. 시도 가맹단체 및 전국규모연맹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15조 (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 및 가맹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①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단체 임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 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해당 가맹단체의 규정을 위반 한 자

5. 제6조 제5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이 사 회

제16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은 이사를 겸직 할 수 있다.

제17조 (기능) 이사회는 당해 가맹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처리·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규약 (또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위임에 따른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7.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주요 사항

제18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단,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회의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③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긴급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적용) 가맹단체의 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36조의 2에 따라 시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23조 (설치) ① 가맹단체는 이사회 의결로써 경기위원회, 선수자격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 상벌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의무위원회, 선수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명칭 및 주요기능·운영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각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등 위원 약간 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당해분야에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한다.

④ 각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24조 (자산) 가맹단체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회비
4. 장애인체육회지원금
5. 사업수입금
6. 기부금 및 찬조금
7. 기타수입금
8. 지정기탁금

제25조 (재산관리) 가맹단체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 하고자 할 때, 또는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표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 (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제26조 (기금의 운영) 각종 기금별로 계정을 따로 정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서에 기금 적립실적을 명기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로 기금운영규정을 따로 정해야 한다.

제27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장애인체육회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말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세입·세출 예산안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체육회가 지원하는 교부금 및 각종 지정후원금(각종 국·내외 대회 등), 일반후원금(사무국 일반 후원금) 집행완료 후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산보고서
2. 예산 집행관련 증빙서류 사본 일체. 단, 정산서에는 총사업비 재원(기금, 지방비, 지정후원금, 자체예산 등)별로 구분하여 증빙되어야 한다.
3. 일반 후원금에 대하여도 별도 보고 하고 증빙되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잔여예산 집행에 대하여도 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을 제외한 재원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제재하고, 최대 3년간 가맹단체 운영비의 50%까지 삭감

할 수 있다.

제9장 사무국

제29조 (사무국) ① 가맹단체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때, 경기단체는 선수출신을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은 장애인체육회와 협의 후 회장이 임명하고 경기단체 사무를 관장한다

제30조 (사무국 규정)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31조 (규약 등의 변경)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각 가맹단체의 규약 (또는 정관으로 이하 같다.) 은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 마다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준용) 이 규정은 각 가맹단체규약에 우선하며, 당해 단체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 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당해 단체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각 가맹단체 규약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